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

판 결

사 건 2019가단57478 배당이의

원 고 A

[redacted]

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공단

2. [redacted]

3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B

4. [redacted]공단

변 론 종 결 2019. 12. 18.

판 결 선 고 2020. 1. 15.

주 문

1.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. 10. 1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[redacted]공단에 대한 배당액 4,000,000원, 피고 [redacted]에 대한 배당액 4,293,770원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 53,464,970원, 피고 [redacted]공단에 대한 배당액 8,569,960원을 각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,568,063원을 182,431,793원으로, 192,767,005원을 246,231,975원으로 각 경정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, 4~6번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1부동산'이라고 한다), 주식회사 E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, 3번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제2부동산'이라고 하고,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8. 1. 16.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,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(이하 '이 사건 가처분'이라고 한다) 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피고 [redacted]시는 2018. 2. 9.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[redacted]공단은 2018. 7. 26.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.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. 7. 2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C, 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고 한다)가 개시되었다.

다. 원고는 2019. 2. 20.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(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8가합5033)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2019. 4. 2. 확정되었다. 이에 따라 2019. 6. 27. 및 2019. 7. 11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피고 [redacted]시, [redacted]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.

라.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기일인 2019. 10. 1. 작성한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라고 한다)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,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아래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.

채권자	배당액	배당순위	이유
피고 [redacted]공단	4,000,000원	1	배당요구권자(체당금, 이 사건 제2부동산)
피고 [redacted] ([redacted]세무서)	4,293,770원	4	교부권자(조세, 이 사건 제2부동산)
피고 [redacted]시	53,464,970원	4	교부권자(조세, 이 사건 제1부동산)
피고 [redacted]공단 ([redacted]서부지사)	8,569,960원	5	교부권자(공과금, 이 사건 제2부동산)
원고	165,568,063원	6	제3취득자(잉여금, 이 사건 제2부동산)
	192,767,005원	6	제3취득자(잉여금, 이 사건 제1부동산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6, 1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 [redacted]공단, [redacted]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,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4, 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,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세,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,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 등 참조).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(대법원 1993. 2. 19.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).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(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65802, 65819 판결 등 참조).

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다.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피고들의 채권은 모두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, 주식회사 E에 대한 것이고,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.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압류등기 내지 교부청구로써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,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국세,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.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[redacted]공단에 대한 배당액 4,000,000원, 피고 [redacted]에 대한 배당액 4,293,770원,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 53,464,970원, 피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[redacted]공단에 대한 배당액 8,569,960원은 각 0원으로, 원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5,568,063원은 182,431,793원으로, 192,767,005원은 246,231,97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.

4. 판단

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공우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8

별지

목록

1. [redacted]시 G 답 828㎡

2. [redacted]시 H 답 332㎡

3. [redacted]시 I 답 1,656㎡

4. [redacted]시 J 답 4,104㎡

5. [redacted]시 K 답 3,479㎡

6. [redacted]시 L 답 1,943㎡. 끝.